

부록 II 사케에 관한 규정

사케의 정의: 주세법 제 3 조

사케 다음에 기재한 주류에서 알코올분이 22 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 a. 쌀, 쌀누룩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키고 여과한 것
- b. 쌀, 쌀누룩, 물과 술지게미 및 그 밖의 정령에서 규정한 물품을 원료로 발효시키고 여과한 것(그 원료 중 해당 정령에서 규정한 물품의 총량 합계가 쌀(누룩쌀 포함) 총량의 50/100 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
- c. 사케에 술지게미를 첨가하고 여과한 것

사케의 원료로 정령에서 규정한 물품: 주세법 시행령 제 2 조

사케의 원료로 정령에서 규정한 물품은 알코올, 쇼츄, 당류, 유기산, 아미노산염 및 사케로 한다.

표시에 관한 기준: 국세청 고시 '사케의 제조법 품질표시기준'

1.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한 사케의 특정 명칭은 해당 사케가 각각 동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한 제조법 품질의 요건에 해당할 때 해당 사케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특정 명칭	제조법 품질의 요건
간쥬슈	정미율 60% 이하의 백미, 쌀누룩 및 물 또는 이와 양조용 알코올을 원료로 하고 음미하여 제조한 사케로 고유의 향미와 빛깔이 양호한 것
준마이슈	백미, 쌀누룩 및 물을 원료로 제조한 사케로 향미와 빛깔이 양호한 것
혼쥬조슈	정미율 70% 이하의 백미, 쌀누룩, 양조용 알코올 및 물을 원료로 제조한 사케로 향미와 빛깔이 양호한 것

본 표의 적용에 관한 통칙

- (1) 정미율이란 백미(현미에서 쌀겨, 배아 등의 표층부를 제거한 상태의 쌀을 말하며, 쌀누룩 제조에 사용하는 백미(이하 '누룩쌀'이라 한다.)를 포함. 이하 동일.)의 그 현미에 대한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
- (2) 백미란 농산물 검사법에 따라 3 등 이상으로 등급이 매겨진 현미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미를 정미한 것을 말한다..

- (3) 쌀누룩이란 백미에 누룩균을 번식시킨 것으로 백미의 전분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특정 명칭의 사케는 누룩쌀의 사용 비율(백미의 중량에 대한 누룩쌀의 중량 비율을 의미. 이하 동일.)이 15%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4) 양조용 알코올이란 전분질 물질 또는 함당질 물질을 원료로 발효시키고 증류한 알코올을 말한다.
 - (5) 양조용 알코올을 원료의 일부로 한 것은 해당 알코올의 중량(알코올 성분 95 도 환산의 중량에 의한다)이 백미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6) 정미율, 누룩쌀 사용 비율 및 양조용 알코올의 백미에 대한 중량 비율이 기준에 적합 여부는 1% 미만의 끝수를 잘라 버린 수치에 따라 판정한다.
 - (7) 향미와 빛깔이 양호한 것이란 이미이취가 없고 사케 고유의 향미와 빛깔을 갖춘 것을 말한다.
2. 전항에 기재한 특정 명칭의 사케 표시는 해당 특정 명칭에 따르고, 이와 유사한 용어 또는 특정 명칭에 맞춰 '극상', '우량', '고급' 등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상을 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경우는 각각 해당 각 호에 기재한 바에 따라도 무방하다.
- (1) 긴조슈 중 쌀, 쌀누룩 및 물만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 '준마이'의 용어를 함께 사용할 경우.
 - (2) 긴조슈 중 정미율 50% 이하의 백미를 원료로 제조하고 고유의 향미와 빛깔이 특히 양호한 것에 '다이긴조슈'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 (3) 준마이슈 또는 혼조조슈 중 향미와 빛깔이 특히 양호하고, 또한 그 취지를 사용 원재료, 제조방법 및 그 밖의 객관적인 사항으로 해당 사케의 용기 또는 포장에 설명 표시하는 것(정미율로 설명 표시할 경우는 정미율이 60% 이하인 경우에 한정.)에 '특별 준마이슈' 또는 '특별 혼조조슈'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재사항의 표시)

3. 다음 각 호에 기재한 사항은 각각 해당 각 호에 기재한 바에 따라 사케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한다.
- (1) 원재료명

해당 사케의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명(물 제외.)을 주세법에서 규정한 원재료명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단,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원재료는 일반적으로 익숙한 호칭 또는 포괄적인 호칭에 따라도 무방하다.

이 경우, 특정 명칭을 표시하는 사케는 원재료명이 표시된 가까운 곳에 정미율을 함께 표시한다.

원재료명, 쌀, 쌀누룩(이하 사용한 원재료를 사용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한다.)

(2) 제조시기

해당 사케를 판매할 목적으로 용기에 채워 밀봉한 시기를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단, 제 5 항에 기재한 저장년수를 표시하는 것은 제조시기를 대신하여 제조장에서 운반한 시기를 표시하고, 또한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사케(주세법 제 28 조의 3 제 1 항((미납세 인수))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미납세로 인수하는 것을 제외. 이하 동일.)로 제조시기가 불명확한 것은 제조시기를 대신하여 수입년월(관세법 제 67 조((수출 또는 수입 허가))에서 규정한 수입 허가서에 기재된 연월을 말한다.)을 '수입년월'의 문자 뒤에 표시해도 무방하다.

- a. 제조년월 헤이세이 9 년 4 월
- b. 제조년월 9.4
- c. 제조년월 1997.4
- d. 제조년월 97.4

(3) 보존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

제조 후 전혀 가열 처리를 하지 않고 제조장에서 운반된 사케에는 보존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4) 원산국명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사케(해당 인수 후 재병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에는 해당 사케의 원산국명을 관세법 제 67 조에서 규정한 수입 신고에 기재하는 원산국명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원산국명에 이어 해당 사케의 생산지명을 표시해도 무방하다.

(5) 외국산 사케를 사용한 것의 표시

일본 국내에서 국내산 사케와 외국산 사케 모두를 사용하여 제조한 사케는 외국산 사케의원산국명 및 사용 비율을 표시한다. 또한 사용 비율은 10%의 폭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4. 전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사케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기 쉬운 곳에 뚜렷하게 표시하고,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는 8 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통일된 일본 문자로 한다. 단, 용량 200ml 이하의 용기는 6 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해도 무방하다.

(임의 기재사항의 표시)

5. 다음 각 호에 기재한 사항을 사케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경우는 각각 해당 각 호에 기재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원료미의 품종명

원료미의 품종명은 해당 원료미의 사용 비율(해당 사케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미의 총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동일.)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여러 원료미의 품종명을 표시할 때는 해당 여러 원료미의 총 사용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표시할 수 있고, 표시할 때는 해당 원료미의 사용 비율을 함께 표시한다.

- (2) 사케의 산지명
사케의 산지명은 해당 사케의 전부가 해당 산지에서 양조(가수 조정을 하는 행위 포함.)된 것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다.
- (3) 저장년수
저장년수(사케를 저장용기에 저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저장을 종료한 날까지의 연수를 말한다.)는 1년 미만의 끝수를 잘라 버린 연수에 따라 표시하고 저장년수가 다른 것을 혼화한 사케인 경우는 해당 연수가 가장 짧은 사케의 연수로 표시한다.
- (4) 겐슈
겐슈의 용어는 제조 후 가수 조정(알코올 성분 1% 미만 범위 내의 가수 조정 제외.)을 하지 않은 사케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다.
- (5) 나마자케
나마자케의 용어는 제조 후 전혀 가열 처리를 하지 않은 사케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다.
- (6) 나마초조슈
나마초조슈의 용어는 제조 후 가열 처리를 하지 않고 저장하여 제조장에서 운반될 때에 가열 처리한 사케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다.
- (7) 키잇폰
키잇폰의 용어는 단일 제조장에서만 양조한 준마이슈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다.
- (8) 타루자케
타루자케의 용어는 나무로 만든 타루(통)에서 저장하여 나무향이 배인 사케(병 및 그 밖의 용기에 갈아 담은 것을 포함.)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다.
- (9) '극상', '우량', '고급' 등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상을 주는 용어
'극상', '우량', '고급' 등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상을 주는 용어는 동일한 품종 또는 상표의 사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서 향미와 빛깔이 특히 양호하고, 또한 그 취지를 사용 원재료, 제조방법 및 그 밖의 객관적인 사항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케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특별'의 용어는 '특별 준마이슈' 및 '특별 혼조조슈'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0) 수상 표기
수상 표기는 공적기관(품질심사의 실시방법이 공개되고 해당 품질심사를 매년 또는 정기적인 기간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한정.)에서 부여받은 상인 경우에 해당 수상한 사케와 동일한 저장용기에 담긴 사케에 대해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할 때는 수상기관 및 수상년도를 함께 표시한다.

(표시 금지사항)

6. 다음 각호에 기재한 사항은 이를 사케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단, 제 3 호에 기재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표시된 가까운 곳에 제 4 항에서 규정한 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로 특정 명칭의 사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설명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해도 무방하다.

- (1) 사케의 제조법, 품질 등이 업계에서 '최고', '제일', '대표' 등 최상급을 의미하는 용어
- (2) 관공청 납품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 (3) 특정 명칭 사케 이외의 사케에 대해 특정 명칭과 유사한 용어